

2023년 중요 환경법 판례 분석

율촌은 매년 지난 해 선고된 주요 환경법 판결을 선별하여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선고된 주요 환경법 판결의 쟁점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 이번 Legal Update는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2024년 8월에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¹⁾을 편집한 것입니다.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방법·정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사안]

피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6. 6. 4.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유해화학물질)이 증발해 약 33.04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6. 4.부터 6. 29.까지 사이에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시했다(원고 일부승소).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주요 판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장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Related Areas

환경(환경·보건·안전)

에너지
(규제·개발·금융·분쟁)

ESG

Contact

윤용희 변호사
02-528-5284
yhyoon@yulchon.com

- 기체 상태인 불화수소는 대기 중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후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해 흰 연기를 형성한 다음 불산의 형태로 대부분 지표면으로 낙하하고, 불화수소 누출 시 대피반경은 소량 누출의 경우 낮 0.2km, 밤 0.5km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500m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람은 이 사건 공장이 있는 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1.0~2.1m/s의 속도로 불고 있었으며, 시간대는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음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불산에 노출됐을 때 보이는 증상을 공통되게 호소했고, 이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병원치료 등을 받았음.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통된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위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음

[대법원 판결 요지]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뒀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전체적으로 봐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해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해설]

대법원은 기존에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관련 신개연성설을 취하고 있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이에 따르면 원고는 (1) 피고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2) 오염물질이 피해 지역에 도달했으며, (3) 그 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되는 이상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1) 피고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2) 원인 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특별 규정(제9조 제1항)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6년 1월 시행됐고, 기존에 대법원의 신개연성설과 관련해 위 특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은 “피해자에게 배출물질의 도달의 증명을 요구하는 신개연성 이론”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특별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제 환경오염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2항에 열거된 여러 요소 관련 간접사실만을 입증하면 도달요건의 입증 없이 인과관계를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주의의무 및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사안]

파주시장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K회사)에게 파주시 소재 사업지구 내에서 시행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했고, K회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원고)에게 위탁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K회사에 제출했고, K회사는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파주시장에게 제출했다.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는 원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영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해 구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조항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업무정지 3개월)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1)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일 뿐이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2)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으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가 제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문가로 선정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한 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관련 전문가 선정 및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각 쟁점에 대해 다른 결론을 제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은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해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이를 넘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해설]

위와 같은 판시를 기초로, 대법원은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영이 서식 사실에 관해 방송, 학술자료가 존재하는 점, (2) 조류 전문가들의 연구 동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수리부영이가 서식한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하고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고 입장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에 비춰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3) 그럼에도 원고는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영이의 서식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수리부영이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전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했다는 점, (4)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수리부영이의 서식 사실 관련 내용이 누락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지구 내 수리부영이의 서식 사실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은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 중 ①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조사 및 ②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내용의 작성만을 수행할 수 있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위의 업종 구분은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조사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구분일 뿐,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주의의무 수준을 낮추거나 그 책임을 감면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진동 때문에 사육하는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사안]

원고는 2012. 7.경부터 안양시 소재 지상 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번식해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들은 2016. 12.경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1.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했다. 원고는 공사기간 중 피고들에게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했고, 안양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판매장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주간 70dB(A) 이하”)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안양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60dB(A)”)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그러나 이런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해설]

대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 (1)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 때문에 사육하는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그런데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가축의 폐사·유산·사산·압사·부상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최대소음 70dB(A)을, 성장 지연·수태율 저하·산자수 감소·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평균소음 60dB(A)을 각 해당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음
- (2)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등), 비록 이 사건 판매장과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3) 피고가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이는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뤄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의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사안]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판매·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부산 소재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소외 1 소유의 레미콘차량(이하 “이 사건 레미콘차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원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내용의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소외 2는 2020. 9.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이 사건 레미콘차량에 싣고 원고 지정 공사현장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세척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같은 날 15시경 위 공사현장 인근 하천 주변 교량에서 레미콘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다시 세척했다.

피고(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속 공무원은 같은 날 19:10경 교량 위에 고여 있는 오염수의 수소이온농도(pH)가 11 이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5.8~8.6”)을 초과함을 확인했다. 피고는 2020. 11. 6. 원고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은 (1)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2)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의 관련 시설로 신고해야 할 레미콘차량은 사업자

가 소유하는 레미콘차량에 한정되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통해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은 이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직원”이 “협력사 소유” 레미콘차량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원심은 폐수배출시설(“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로서 레미콘차량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레미콘차량에 한정되고 협력사 등 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레미콘 제조판매회사들이 빈번하게 협력사의 레미콘차량을 사용해 레미콘을 운반한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로서 레미콘차량의 범위를 그 소유관계로 인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